

# 신림선 여객운송약관 주요내용

2022. 05. 28 기준

## 1. 여객의 구분 및 기본운임

구 分	범 위	기본운임	
		교통카드	1회권
일 반 (어른)	만19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사람	1,250원	선·후불교통카드 +100원
청소년	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사람 또는 초등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만18세 초과 만 24세 이하의 사람(외국인 포함)	720원	일반 1회권 교통카드 적용
어린이	만6세 이상 만13세 미만의 사람 (단 13세 이상의 초등학생 포함)	450원	450원
유 아	만6세미만의 사람	운임면제	운임면제

## 2. 운임 계산방법 및 할인율 기준(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제 적용)

도시철도 만 이용시	• 기본운임 : 10Km까지 1,250원(1회권은 1,350원) • 추가운임 : 10 ~ 50Km 이내 : 5Km 마다 100원 추가 50Km 초과구간 : 8Km 마다 100원 추가 * 수도권 내외구간을 연속하여 이용시 수도권 내 운임을 먼저 적용 후 수도권 외 구간(평택~신창, 가평~춘천)은 4Km마다 100원씩 추가 - 다음의 경우에는 기본운임이 가장 높은 교통수단의 기본운임 적용 - 서울광역, 경기(직행)좌석형 및 인천광역(좌석)시내버스 : 30Km - 기타버스 기본거리 : 10Km - 상기거리를 초과하는 경우 : 5Km 마다 추가운임 합산한 금액
	* 4회(5회 승차)까지 환승 가능(하차 후 30분 이내, 21시 ~ 익일 07시에는 1시간이내 승차시 적용) * 동일노선 버스 환승불가, 도시철도 하차 후 다시 도시철도 승차시 환승불가

\* 조조할인제 : 첫차~06:30까지 승차시 기본운임의 20% 할인 - 선·후불 교통카드만 적용  
- 다만, 타 교통수단을 먼저 이용하고 환승 승차한 경우는 제외

## 3. 정기권의 이용

정기권	• 여객이 도시철도구간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 [서울전용] 55,000원(1,250원 × 44회) [거리비례용] 1~18단계(55,000 ~ 117,800원) - 1회 충전시 30일/60회 이내 사용(정기권카드 별매) * 유효기간 또는 잔여횟수 중 어느것이라도 선도래하면 사용만료

## 4. 무임(우대용 교통카드, 우대용 1회권 사용)

노 인	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
장애인	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
유공자	• 국가유공상이자 :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에 정한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혁명 부상자, 공상공무원 및 특별 공로상이자 • 독립유공자 :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애국지사 • 5·18민주유공상이자 : 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에 정한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

## 5. 승차권의 사용조건 및 협력

- 1인 1매의 승차권으로 사용(1매 승차권으로 다인 사용불가, 단, 단체권, 일부 특수권 제외)
- 여행도중 역에서 하차할 수 있으며, 이때 잔여운임은 반환되지 않음.
- 여행도중 자동개집표기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승차할 경우에는 별도의 승차로 간주되며, 새롭게 운임을 지불하여야 함.
- 동일한 역에서 5분이내 최초승차▶하차▶재승차 시 1회에 한하여 재승차시의 운임면제(단, 환승횟수는 1회 차감)
- 대상 : 선·후불교통카드, 정기권(1회용교통카드 제외)
- 예외 : 환승역에서 노선이 다른 경우 및 여행도중 하차 하였다가 다시 승차하는 경우 제외
- 개표 후 동일한 역에서 되돌아 나오는 경우 자동개집표기에서 집표처리하며, 개표시 지불된 운임은 반환하지 않음.
- 개표 후 5시간이 초과된 경우 교통카드 또는 1회권 해당 기본운임 추가 납부

## 6. 승차권의 반환

- 열차운행 중단 및 자연 등의 사유로 여행 불가시 : 해당 승차권 운임 반환  
(미승차 확인증 소지 고객의 경우 여행 중지일 포함 7일 이내 청구 시)
- 개표한 후 마지막 열차가 출발하여 승차하지 못한 경우 운임 반환
- 미사용 승차권 반환  
- 미사용 1회권 또는 미개표 1회권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운임반환 청구(1회권 한)

## 7. 부가금 징수 기준

- 다음의 경우에 승차구간의 여객운임(어린이는 어린이용 1회권운임)과 30배의 부가금징수 (직원에게 미리 신고하여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 승차구간의 운임만 징수)
  -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하거나 운임지역 내로 무단 입장
  - 승차권을 무효로 하여 회수하였을 때
  - 개표불능 사유 외에 승차권을 개표를 받지 않고 승차하였을 때
  - 승차권 검사시 승차권을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집표 등 회수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
  - 이용시점에서 유효하지 않은 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을 때
  - 여객의 부주의로 1회용 승차권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
  - 승차권 검사에 응하지 않을 때
  - 유효하지 않거나 도난, 분실 등 사고처리된 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을 때

### 승차권의 무효

- 무임대상이 아닌 사람이 우대권 또는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을 때
- 어른이 어린이권 및 우대권, 우대용 교통카드, 청소년카드 및 어린이 카드를 사용하였을 때
- 청소년이 어린이권 및 우대권, 우대용 교통카드 및 어린이카드를 사용하였을 때
- 승차권의 원형 및 표시사항을 고의로 훼손 또는 변조하였을 때
- 통용기간이 지난 승차권을 사용하였을 때
- 우대용 1회권, 청소년카드 및 우대용 교통카드 사용자가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을 때
- 기타 할인된 승차권을 사용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할인된 승차권을 사용할 때
- 그 밖의 부정승차의 수단으로 사용하였을 때

## 8. 휴대금지(제한품) 안내

- 직원은 여객의 휴대품 중 금지품이 있는 것으로 예상 될 때에는 여객의 물건을 확인 할 수 있고, 협조하지 않는 경우 승차를 거절할 수 있음.

구 分	종 류
위해물품	화약류, 고압가스, 인화성액체, 가연성 물질류, 산화성 물질류, 독물류, 방사성물질, 부식성물질, 마취성물질, 총포·도검류 등 기타 유해물품
위해물품 이외의 휴대금지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동물(애완용 동물의 경우 용기에 넣고 걸포장을 하여 용기안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,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경우 예외)</li><li>불결, 악취 등 여객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</li><li>전차선등에 접촉으로 안전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품</li></ul>
휴대품 제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길이, 너비, 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 이상인 물품과 중량이 32kg을 초과하는 물품(휠체어, 유모차는 휴대하고 승차 할 수 있음)</li><li>자전거(접이식자전거 포함) 및 전동킥보드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음. 다만, 장애인 이동수단으로 간주하는 접이식자전거는 휴대할 수 있음)</li></ul>

## 9. 여객운송의 거절 또는 퇴거 대상 행위

- 휴대금지품, 휴대제한품, 위해물품을 휴대하는 행위
- 역사 및 열차 내 설치된 비상정지버튼,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의 임의조작 행위
- 승강장안전문이나 열차출입문이 닫힐 때 무리하게 승하차하거나 이물질을 넣는 행위
- 여객의 행동, 나이 또는 정신적·육체적 조건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여행이 곤란함에도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은 경우
-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이나 위험 등의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
- 유经济效益을 소지하지 아니하였거나 승차권의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
- 기부를 청하거나 물품판매, 연설, 권유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
- 역구내 또는 열차내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
- 열차가 운행되고 있는 도중에 타고 내리거나 고의로 출입문개폐를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
- 역구내, 또는 열차내에서 흡연, 광고를 부착 또는 배포, 산업폐기물·생활폐기물·오물을 버리는 행위
- 직원의 직무상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폭행·협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
- 그 밖의 공중 또는 여객에게 위험을 끼치는 행위 등



남서울경전철(주)

Rotem SRS